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20
----------	-------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 의 자 : 강득구 · 박선원 · 이병진
한병도 · 이학영 · 송재봉
정일영 · 조계원 · 채현일
김주영 · 서삼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보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12조제1항 및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6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6제1항 중 “실내공기질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를 “제12조에 따른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제13조제1항과 제7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u>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u>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 ----- ----- ----- ----- <u>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 ----- ----- -----.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u>실내공기질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u>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u>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13조제1항과 제7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u>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